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52호,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원소청결정이행자문위원회 설치(안 제25조 신설)

구제조치 명령 등 의사결정을 위하여 ‘교원소청결정이행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설정(안 제26조 신설)

교육부장관 등이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에게 이행강제금

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위임(안 제31조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교원소청결정이행자문위원회)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교육부장관 등’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소청결정이행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교원 인사 또는 징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 등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교육부장관 등은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등이 정한다.

제26조(구제명령의 이행기간) 교육부장관 등이 법 제10조의3에 따라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단,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9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한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징수절차) ① 교육부장관 등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처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교육부장관 등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등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법 제10조의4 제3항의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9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교육부장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교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0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교육부장관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법 제10조의4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단, 이행강제금의 산정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확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부가금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	금액			
	1회	2회	3회	4회
제임용거부, 파면, 해임, 면직,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1,000만원	1,3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
정직, 강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1,400만원
감봉, 견책,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조(교원소청결정이행자문위원회)</u> ① <u>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교육부장관 등’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소청결정이행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u> <u>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u> <u>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교원 인사 또는 징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 등이 위촉한다.</u> <u>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u> <u>⑤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u>

<신 설>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 등은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등이 정한다.

제26조(구제명령의 이행기간) 교육부장관 등이 법 제10조의3에 따라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단, 구제명령이 처

<신 설>

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9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한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징수절차) ① 교육부장관 등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처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교육부장관 등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등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신 설>

<신 설>

<신 설>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법 제10조의4 제3항의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9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교육부장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교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0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교육부장관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신 설>

직권 또는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법 제10조의 4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단, 이행강제금의 산정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확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748